

사하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1992. 7. 1
사하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1992. 7. 8

다. 상정일자 : 1992. 7. 8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이유 : 별첨안 참조

나. 주요골자 : 별첨안 참조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: 별첨보고서 참조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별첨참조

5. 토론요지

가. 반대토론 : 없음

나. 찬성토론 : 없음

다. 표결결과 : 재석위원 11명(찬성 10명, 기권 1명)

6. 심사결과 : 원안대로 처리

질의, 답변사항

● 김정현위원 질의

구청보조금으로 구청장이 위탁관리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시지부장의 지도 감독을 받은 행정을 간섭하는 것이 아닌가?

● 총무과장 답변

김정현위원에 동감합니다. 본 조례안 제7조3항에 새마을문고 중앙회 회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고지부 회장을 지도감독 하는 것이지 마을문고 운영전반을 지도감독 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.

● 장창조위원

1) 도서관 직원 임용을 시지부장의 승인을 얻어 임용함은 위탁관리 근본 취지와 행정통제의 느낌이 있고

2) 이동도서관 설치, 운영예산은 보조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한데 기타 수입금이 무엇인지?

● 총무과장 답변

1) 도서관 직원을 구간교류를 할 때 시지부에서 조정하기 위함이며

2) 기타수입금은 이자수입과 기탁이 있을시를 말한것임